**◉국가유산청고시 제2025-0110호**
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13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명승 「대관령 옛길」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08월 18일

국가유산청장

# 명승 「대관령 옛길」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

1. 고시명 : 명승 「대관령 옛길」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

2. 고시내용

가. 대상유산

| 연번 | 지정종별 | 지정명칭 | 소재지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명승 | 대관령 옛길 |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삼포암길 133, 등 | |
| 2 | 명승 | 강릉 용연계곡 일원 |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-0 등 | |
| 3 | 명승 |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|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저동 94 등 | 통합 고시 |
| 4 | 보물 | 강릉 경포대 |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포로 365 | |

나. 조정사유

○ 자연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○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표기 표준화 및 일부 용어 수정 등

다. 관련근거

○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, 제17조제1항제4호

○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

○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

○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, 제35조제1항제2호

○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

라. 기준의 적용

○ 본 허용기준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4항,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와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,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

○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5항 및 「문

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

마.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: 세부내용 붙임 참조

○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

- 국가유산청 홈페이지(www.khs.go.kr) : 행정정보→법령정보→고시→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
-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(http://www.gis-heritage.go.kr) : 해당유산 검색→현상변경허용기준

3. 시행 기준일 : 관보 고시일

4. 연 락 처

가. 국가유산청

○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: 전화 042-610-7677 / 팩스 042-610-7689

- 주소 : (우 35204)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
- 홈페이지 : http://www.khs.go.kr

나. 지방자치단체

○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: 전화 033-249-3316 / 팩스 063-249-4179

- 주소 : (우 24266)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
- 홈페이지 : http://www.state.gwd.go.kr/

○ 강릉시 문화유산과 : 전화 033-640-5581 / 팩스 063-640-4773

- 주소 : (우 25522)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, 강릉시청
- 홈페이지 : http://www.gn.go.kr

붙임 : 명승「대관령 옛길」, 명승「강릉 용연계곡 일원」, 명승「강릉 경포대와 경포호」및 보물「강릉 경포대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[붙임] 명승「대관령 옛길」, 명승「강릉 용연계곡 일원」, 명승「강릉 경포대와 경포호」및 보물「강릉 경포대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1. 명승 「대관령 옛길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| 구분 |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3구역 | ○ 강릉시 ·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| |
| 공통사항 |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· 재축을 허용함.<br>○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 · 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<br>○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<br>○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 · 흙쌓기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<br>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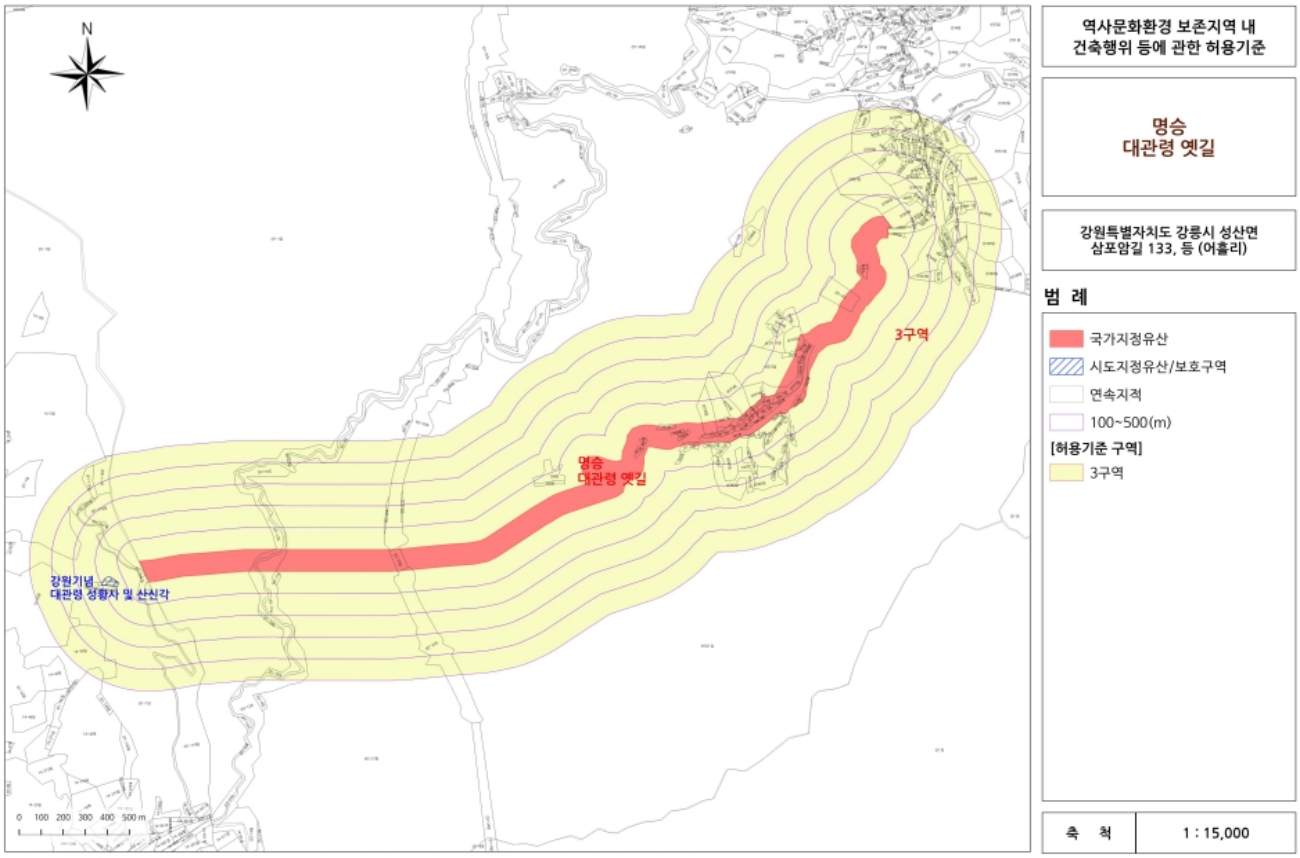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2. 명승 「강릉 용연계곡 일원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| 구분 |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3구역 | ○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| |
| 공통사항 |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br>○ 대기오염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배출시설(소음·진동관리법), 폐기물처리시설(폐기물관리법), 위험물제조시설(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), 분뇨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검토함.<br>○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<br>○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·흙쌓기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<br>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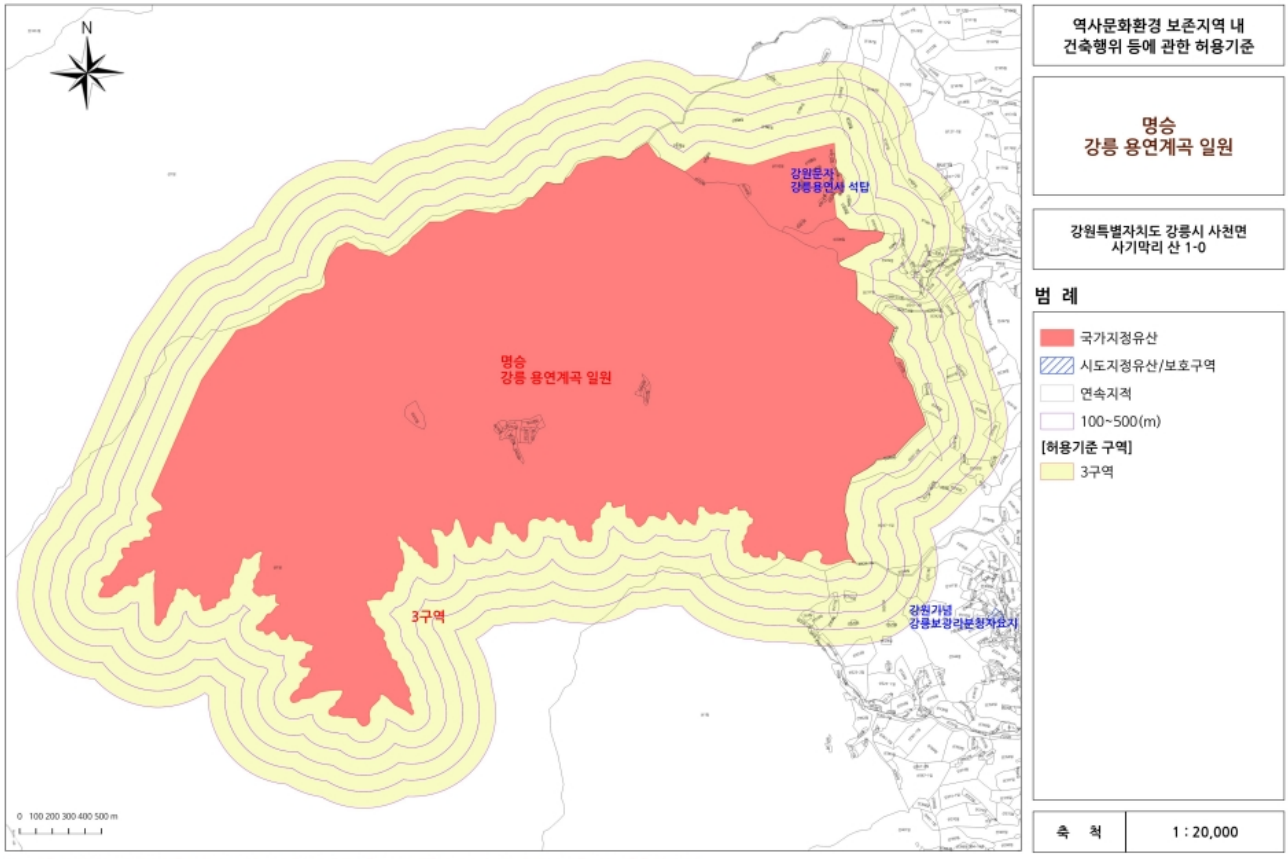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3. 명승 「강릉 경포대와 경포호」 및 보물 「강릉 경포대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| 구분 |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| |
|---|---|---|
| | 평지붕 | 경사지붕(10:3 이상) |
| 1구역 | ○ 개별검토 | |
| 2-1구역 | ○ 최고높이 5m 이하 | ○ 최고높이 8m 이하 |
| 2-2구역 | ○ 최고높이 8m 이하 | ○ 최고높이 12m 이하 |
| 3구역 | ○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| |
| 공통사항 | 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br>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<br>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<br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<br>○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<br>○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·흙쌓기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br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<br>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.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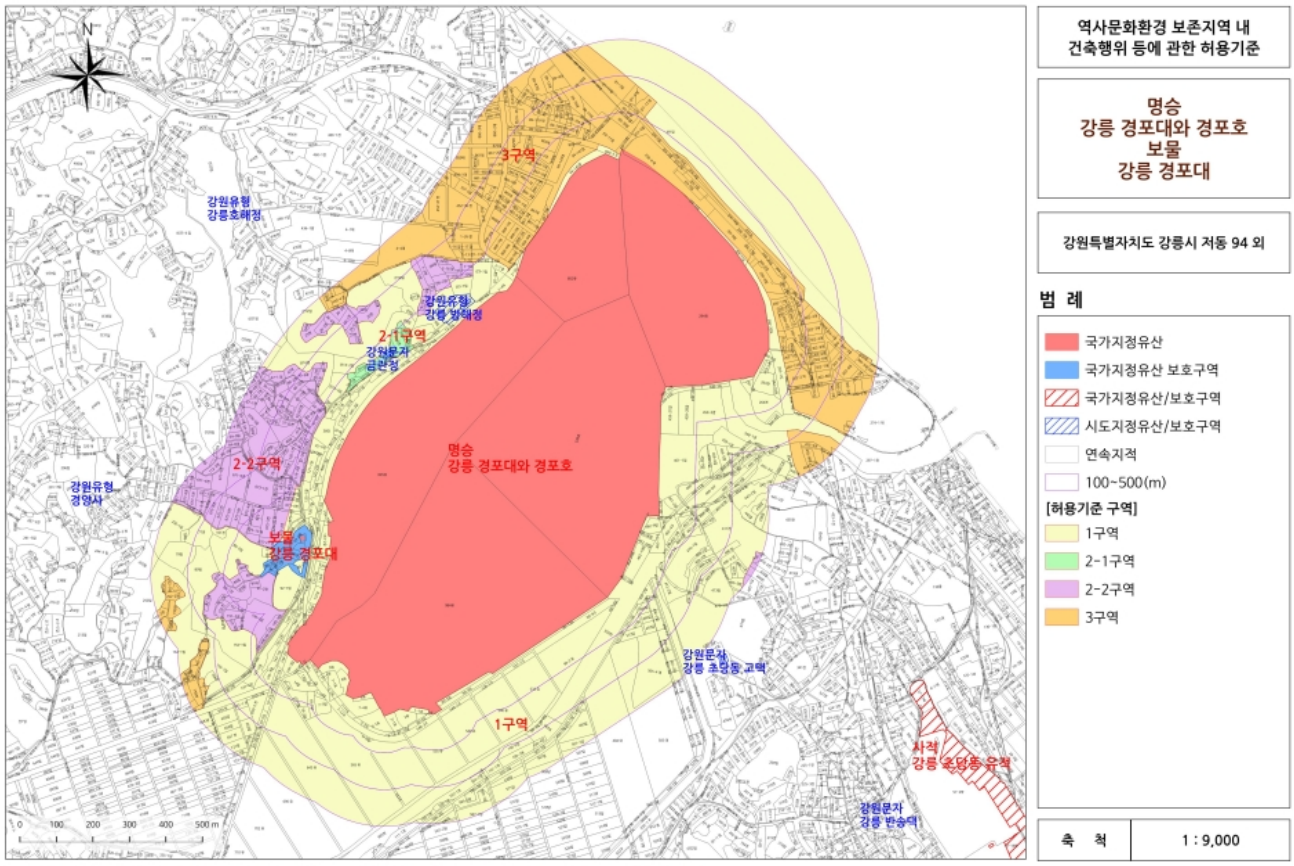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